

등록번호	환경과-3848
등록일자	2016.2.2.
결재일자	2016.2.2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대기보전팀장	환경과장	복지환경국장
이태훈	김윤국	김선수	전결 02/02 이우룡
협조	주택재개발팀장 건축지도팀장 재난관리팀장	현병일 代서준 김종호	

# 공사장 비산먼지 · 소음관리 계획



복지환경국  
환 경 과

# 공사장 비산먼지·소음 관리 계획

비산먼지발생사업장, 특정공사장에 대한 분야별 민·관 합동 지도 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 안전에 기여

## I 추진 개요

### □ 추진근거

-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(비산먼지의 규제)
-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(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)
- 2016년도 구청장 업무보고 관련(공사장 비산먼지·소음관리 강화)

### □ 필요성

- 황사,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질 악화로 구민 건강피해 우려
- 정온합이 요구되는 주거시설 주변 공사장 소음문제 효율적 관리
- 매년 민원 증가 추세에 따른 공사장 비산먼지·소음 관리강화 필요

#### ▶ 우리구 최근 4년 간 민원 발생 현황(먼지, 소음)

2012년	→	2013년	→	2014년	→	2015년
541건		610건		639건		717건

#### ▶ 2015년도 공사장 행정처분 현황

단위 : 개소

계	개선명령	경고	조 이 행 명 령	소 음 발 생 행 위 중 지	소 음 원 사 용 금 지	사 용 중 지
45	25	14	2	2	1	1

## II 추진 방향

- 민원 발생 예방 차원의 사전점검 추진
- 전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도점검
- 민·관 합동 점검으로 점검활동의 객관성 확보

## III 세부 추진 계획

### □ 공사장 비산먼지·소음 관리 매뉴얼 작성

- 작성내용 : 사업(공사) 공정별 관리 기준 작성
  - 허가시 : 공사장 비산먼지·소음 억제시설 기준, 민원예방 안내
  - 착공시 : 현장 시설확인 및 민원대처 요령
  - 종료시 :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민원사례 분석 정리
- 활용 : 민원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장 비산먼지·소음 관리업무에 활용

### □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강화

- 점검대상 : 96개소
  - 비산먼지발생사업장
  - 특정공사장(굴삭기 등 특정장비 5일 이상 사용 공사장)

#### ▶ 동별 공사장 분포 현황

단위 : 개소

계	명동	소공동	회현동	광희동	청구동	필동	황학동	을지로	신당동	다산동	중림동	약수동	장충동	신당5	동화동
96	19	10	10	8	7	7	7	6	6	4	4	3	2	2	1

## ○ 점검일정

연면적별 공사장수 (개소)		10,000㎡ 이상 (24)	5,000~10,000㎡ (18)	1,000~5000㎡ (32)	1,000㎡ 미만 (22)
점검 일정	상반기	2.22~3.18 (19일 간)	3.28~4.15 (14일 간)	4.27~5.27 (22일 간)	6.7~6.24 (14일 간)
	하반기	7.28~8.19 (16일 간)	9.21~10.7 (12일 간)	10.24~11.18 (20일 간)	11.28~12.16 (15일 간)

## ○ 점검반 편성

단위 : 명

계	공무원	생활불편 민원해결사	민간전문가	
			환경감시원	건축구조기술사
6	2	2 배정요청 (서울시)	1	1 배정요청 (안전치수과)

## ○ 점검방법

-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 실시
- 공사장 비산먼지·소음 관리 매뉴얼〔붙임 1〕 참고하여 추진
- 지도·점검표〔붙임 2〕에 의한 상세 기준 준수여부 확인

## ○ 주요 점검내용

- 비산먼지분야
  -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사항 확인
  - 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
  -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등 주변 환경관리 적정여부 등

- 소음·진동분야

- 특정공사 사전신고사항 확인
-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기준 준수여부
- 소음·진동 규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

- 안전분야

- 건축 공사장 안전규정 준수 여부
- 기타 위험요인 확인

**점검결과 조치**

- 법령에서 정한 기준 부적합 사항은 강제 개선 조치
-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
- 안전분야 위법사항은 업무관장 부서에 통보
  - 건축과, 주택과 등에 즉시 통보하여 신속 조치
- 위반업소 관리대장 작성 비치

**향후계획**

- 공사 연면적 10,000 $m^2$ 이상의 대형 공사장, 법령위반 공사장, 민원다발 공사장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추진
  - 특별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월 1회 이상 현장 확인
  - 수시 환경순찰 실시하고 기록관리 유지
- 비산먼지, 소음,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계속 추진
- 서울시 일자리사업 참여자(생활불편민원해결사)활용하여 상시 계도활동 추진

## IV

## 행정 사항

### 공사장 점검활동 참여자 수당 지급

#### ○ 민간 환경감시원

- 지급액 : 40,000원/일
- 예산과목 : 환경과, 맑고푸른중구건설, 쾌적한대기환경, 일반보상금, 기타보상금
- 지급근거 : 「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조례」 제17조

#### ○ 건축구조기술사(중구안전관리자문단)

- 지급액 : 120,000원/일
- 예산과목 : 안전치수과, 재난예방관리, 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관리, 일반보상금, 기타보상금
- 지급근거 : 「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」 제40조

### 서울시 일자리사업 참여자(생활불편민원해결사) 배정요청

- 요청부서 :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
- 요청인원 : 2명

### 업무협조

#### ○ 건축과, 주택과

- 건축 허가시 공사장 비산먼지·소음 억제시설 기준, 민원예방 안내
- 공사장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
- 피해보상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

#### ○ 안전치수과

- 건축구조기술사(중구 안전관리 자문단) 배정
- 기타 건축구조기술사 수당지급 등에 관한 업무

### 실적보고 : 매 반기별 실적 보고

- 붙임 1. 공사장 비산먼지·소음 관리 매뉴얼 1부  
2. 공사장 지도점검표 1부  
3. 점검대상공사장 명단 1부. 끝